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08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8
1.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요	8
2. 유역하수도지원센터 개요	9

I. 제안경위

2025년 6월 11일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 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정책 등 지원을 위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37조제2항 11호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 11. (생략)	② ----- ----- ----- ----- -----.
<신설>	1. ~ 11. (현행과 같음)
12.·13. (생략)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 터의 설립·운영 업무
	12.·13. (현행과 같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명·재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호우 등 물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¹⁾.

1) [2013~2022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태풍	1,690	5,291	13,404	214,965	-	64,200	212,778	222,541	21,086	244,046	1,000,001	100,000
호우	158,129	142,211	1,213	35,887	101,592	53,800	1,651	1,095,172	40,646	322,559	1,982,880	196,286
대설	11,342	32,421	13,021	18,689	83	14,032	671	-	3,527	15,439	109,225	10,923
풍랑	44	-	333	-	-	2,823	-	-	-	-	3,200	320
강풍	932	95	3,891	-	-	7	7	-	445	26	5,403	540
풍랑강풍	-	-	-	8,302	605	-	474	319	-	585	10,285	1029
태풍호우	-	-	-	-	-	6,416	-	-	-	-	6,416	642
낙뢰	-	-	-	-	-	-	26	-	52	-	78	8
한파	-	-	-	-	-	-	-	145	280	-	425	46
지진	-	-	-	11,020	85,022	-	-	-	-	-	96,042	9,604
우박	-	-	-	-	-	-	-	-	16	-	16	2
기타	미산정					7	618	-	-	-	625	63
합계	172,137	180,019	31,862	288,862	187,302	141,284	216,226	1,318,177	66,053	592,656	3,194,578	319,458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2022

그런데 물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 및 시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재난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²⁾.

[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물재해 발생 현황(2019~2023)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재난명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설수	피해액	시설수	피해액
2019	합 계	4	215	232	24,679
	제18호 태풍 미탁	4	215	232	24,679
2020	합 계	153	48,916	1,276	147,274
	7.28~8.11 호우	148	48,723	1,011	128,622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5	193	265	18,652
2021	합 계	-	-	209	14,673
	7.5~7.8 집중호우	-	-	98	7,314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	-	111	7,359
2022	합 계	23	2,970	427	58,803
	8.8~8.17 집중호우	23	2,970	427	58,803
	제11호 태풍 힌남노	2	264	116	72,449
2023	합 계	42	17,560	735	162,669
	6.27.~7.27. 호우	42	17,560	616	147,082
	제6호 태풍 카눈	-	-	119	15,587
계		231	70,483	3,240	435,796

자료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2) 현재 기후부는 기관 역할분담을 통해 수자원 이용·관리 계획수립, 수자원시설 점검·관리·현장 조치, 가뭄·홍수 예·경보, 재해복구 및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등 수재해 대응 업무 수행 중

구 분	주요 업무	관련 규정
기후부 (수자원정책관, 물이용정책관)	-수자원의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시책 수립 -수자원 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 -홍수·가뭄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증진 -홍수 및 가뭄(상수도 총괄) 대응 관련 방재업무 등	-수자원법 제3조 -수자원법 제26조 -댐건설관리법 제5조, 제6조
유역·지방청	-국가하천 시설 점검·관리, 현장조치 및 재해복구 -국가하천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관리 등	-하천 유지·보수안전점검 규칙 제4조 등 -하천법 제10조, 제12조
홍수통제소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및 수문조사 -댐·보·저수지 수문방류 승인 -홍수 및 갈수 예보 등	-수자원법 제7조, 제9조 -하천법 제41조 -수자원법 제8조
수자원공사 (수면관리자)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 등	-수자원공사법 제9조
수자원조사기술원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운영 관련 업무 등	-수자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 제2024-59호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정책 등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및 복구 능력을 향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환경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유역 단위의 조직을 설립·운영하도록 한 입법례로는 유역수도지원센터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규정한 「수도법」³⁾과 「하수도법」⁴⁾이 있으며, 개정안은 이들 입법례와 유사하게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유역수도지원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

3) 「수도법」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하수도법」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에 대한 상수도 기술지원, 집중호우·유출사고 등 상수도 관련 재난·위
기상황 대응, 수도 관련 관제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역하수도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⁵⁾의 하수도
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한국환
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도 관련 기술 지원, 재난·사고
위기 대응, 하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⁶⁾.

개정안에 따라 유역 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유역하수도지원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
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 사고예방 및 현장 대응
에 필요한 기술·정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및 지원센
터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센
터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
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별
도로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경상경비 등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5) 「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6) 참고자료1.유역수도지원센터 개요 및 참고자료2. 유역하수도지원센터 개요 참고

추가로 소요되고,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 참고자료 1.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요

□ 지원센터 개요

- (구 성) 유역별 거점지역에 4개 지원센터 구축·운영
 - * 수공 내 한강(과천), 낙동강(대구), 금강(전주), 영섬강(광주) 유역본부에 유역지원센터 개소(20.1월)
- (운영기간) 2020년 ~
- (예산 및 운영주체) 전액국비('20~'25년), K-water 대행
- (운영근거) 수도법 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지원센터 역할

- 지방상수도 재난·사고 등 식용수 위기상황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원, 위기대응 전반에 걸쳐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全过程 지원
- 인력·기술력 등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계획 수립, 시설진단, 유수율 제고, 서비스 등 상수도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
- 수돗물 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 국민 보편적 물서비스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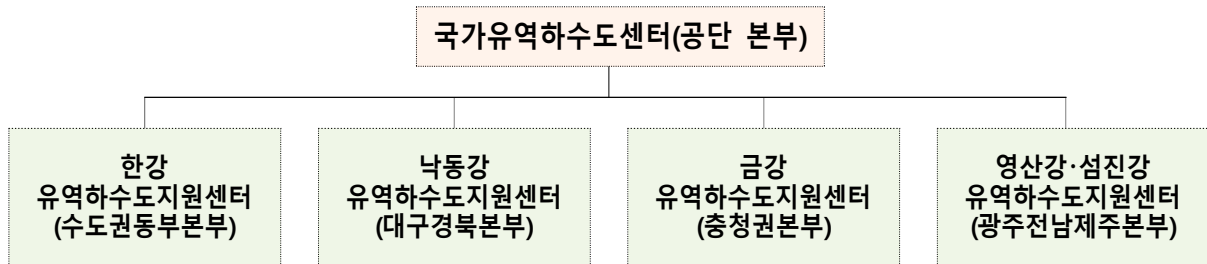
< 유역수도지원센터 지원 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위기대응관리	·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관리체계 컨설팅 · 사고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리스크관리 쏠주기 맞춤형 지원
수도계획수립	· 지방수도 수도정비, 물수요관리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술지원 * 수원다변화(대체수자원), 비상연계, 신기술(SWM 등), 경영개선 등
시설진단지원	· 형식적 외주형태 지자체 기술진단의 고도화·표준화 및 컨설팅 * 정수장·관망·에너지 분야별 지방(상) 진단 표준모델 개발 및 지원
유수율 제고	· 유수율 제고 컨설팅 등 기술지원, 안정적 용수공급 및 경영수지 개선 * DB관리, 관망정비, 관망운영, 누수저감, 관내부탐사 등
급수취약해소	· 농어촌·산간·도서지역 등 지역 내 급수취약지역 해소 지원 * 광역직접공급, 분산형수처리(산간), 지하수저류지(도서·해안), 해수담수화(도서)
수질관리지원	· 지역별 거점 수질검사소와 연계, 고품질 수돗물 관리 컨설팅 등 지원 * 수원관리, 수돗물 생산·공급(정수장·관망 내 취약공정/지점), 수질검사 등
물복지서비스	· 관세척, 워터코디·닥터, 사회안전망, 마중물트럭 등 공동(협업) 추진

※ 참고자료 2. 유역하수도지원센터 개요

□ 지원센터 개요

- **(현 황)** 하수도 재해 및 운영관리 취약지역에 데이터 기반 해결을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통합관제실+4개 상황실)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
- **(구 성)** 유역별 거점지역 지원센터 4개소 중 3개소 구축('24.12, '26년 운영계획)



*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지원센터 구축('24.12월), 영섬강은 '25.3월 구축 예정

- **(운영계획)** 2026년 ~
- **(예산 및 운영주체)** 전액국비('24~'25년), 환경공단 대행
- **(운영근거)** 하수도법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지원센터 역할

- **(선제적 기술지원)**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처리장 기술지원

※ 특히, 도서·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운영 효율화, 통합원격관리 체계 구축 등 기술지원

- ② **(재난·사고위기 대응)** 홍수피해 등 대비하여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 '20년 집중호우로 처리장 침수피해 발생시 지자체 기술지원 요청(70개소)에 따라 한 국환경공단 내 임시 복구지원반 구성·운영한 바 있음

- ③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 관제실(수질TMS+하수도시스템 등) 구축·운영하고, 정보 제공

※ 스마트 하수도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기술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하수도정보시스템으로 생산정보 연계하여 통합관리